

# 2022년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6. 1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0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37건(안건번호 제2022-60771호~6216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60771호~60773호(순번 1번~3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 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60774호(순번 4번)는 언론매체에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10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전부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8쪽~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83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실명 1명, 익명 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등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 및 출판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01개 게시물이 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한 회차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pdf 형태의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pdf 파일은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인 저작권법 제33조에 근거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본래 목적을 넘어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번~3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언론매체 기사가 타인 촬영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민원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본 사안의 경우, 이용된 사진은 음식물을 그 모양과 재료 등이 잘 보이도록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택, 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저작물성에 다소 의문이 있음. 저작물을 생산하는 언론사인 게시자가 촬영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은 있으나,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한편 게시자는 언론사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TV프로그램의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기사로, 이미지 자체를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는 것이 이용의 목적은 아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 또한 있음. 덧붙여 이미지의 권리자와 이용자가 명확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권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
- C 위원: 본건의 경우 음식사진의 저작물성이 있음을 전제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3407판결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임. 영리성, 원저작물과의 내용상 연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B 위원: 본건 사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작물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며,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사안임.

- D 위원: 본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무단이용 사례도 많고, 이에 대한 권리자의 직접 권리행사 또한 활발함.
- A 위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사의 기사 전체가 삭제되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 또한 있음.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번~139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73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엄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1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2. 5. 11. 개봉한 미국 스릴러 영화임.  
(영화 '우주 전사 버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3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00년 개봉한 미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임.

(방송 '종이의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0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9. 3. 부터 2021. 12. 3. 까지 방영한 외국드라마임.

(영화 '目目目目目', 영화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85번 및 순번 1292번은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한 저작물임. 각각 웹하드에서 판매되고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5번~139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139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60771호~60773호(순번 1번~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60774호(순번 4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60775호~62168호(순번 5번~139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2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